

한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2003. 9. 1. 제정
2003.10.17. 개정	2003.12. 2. 개정	2004. 3. 1. 개정	2004. 7.20. 개정	2004.11. 2. 개정
2004.12. 7. 개정	2005. 2.16. 개정	2005. 4.26. 개정	2005. 6.15. 개정	2005.10.18. 개정
2005.12.19. 개정	2006. 2. 6. 개정	2006. 3.21. 개정	2006.10.31. 개정	2007. 3. 1. 개정
2007. 8.14. 개정	2007. 9. 1. 개정	2007.12.12. 개정	2008. 3. 1. 개정	2008. 5. 6. 개정
2008. 7.29. 개정	2009. 1.19. 개정	2009. 9. 1. 개정	2010. 1.14. 개정	2010. 3.25. 개정
2010. 4.27. 개정	2010. 6. 8. 개정	2010. 9.28. 개정	2011. 5.11. 개정	2011. 7. 8. 개정
2011.11. 8. 개정	2012.11.15. 개정	2013. 2. 6. 개정	2013. 5.10. 개정	2013.11.14. 개정
2014. 1.23. 개정	2014. 8.19. 개정	2014. 9.30. 개정	2015. 2. 3. 개정	2015. 8. 4. 개정
2016. 2. 3. 개정	2016. 6.14. 개정	2016.10.11. 개정	2016.10.18. 개정	2016.11.15. 개정
2017. 1.25. 개정	2017.11. 7. 개정	2018. 5.28. 개정	2018.11. 6. 개정	2018.12. 4. 개정
2019. 4.24. 개정	2019. 7.25. 개정	2019.11.18. 개정	2019.12.30. 개정	2020. 3.11. 개정
2020. 5. 4. 개정	2020. 8.11. 개정	2020. 8.12. 개정	2021. 1.20. 개정	2021. 6.28. 개정
			2021.10.29. 개정	2022.01.1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과 목표) ① 한남대학교 대학원은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독창적인 연구능력을 함양하고,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전한 지성인 양성
2. 한국사회를 선도하는 실천적 연구능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유능한 연구자 배출 **개정(2009. 9. 1.)**
3.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독창적인 전문인 양성 **개정(2009. 9. 1.)**
4. 학·연·산 협동 체제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인 양성 **개정(2004. 3. 1.)**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개정(2009. 9. 1.)**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개정(2009. 9. 1.)**
2. 특수대학원 :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학제신학대학원 **개정(2005. 2. 16., 2005. 4. 26., 2005. 12. 19., 2006. 10. 31., 2010. 6. 8., 2014. 1. 23, 2016.10.11.)**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필요한 경우 석·박사통합과정, 학과 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학연 석·박사과정, 산학협력 석·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2004. 11. 2., 2013. 5. 10.)**

②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개정(2004. 3. 1.)**

- ③ 외국의 대학원과 협약을 맺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4. 3. 1.)
- ④ 대학원과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둘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수업연한, 학생선발의 기준과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수업료, 학기와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및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보호 등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2016.2.3.)
- ⑤ 대학원에 학부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을 둘 수 있으며, 학·석사연계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연계과정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2016.6.14.)

제2장 입학

제4조(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내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하는 인원은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개정(2004. 3. 1, 2009. 9. 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2021.06.28.)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유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계약학과 지원자 신설(2016. 2. 3.)

제5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2004. 3. 1.)

제6조(입학지원 자격) ① 대학원의 학·석사연계과정,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학과 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2004. 3. 1., 2016.6.14.)

1. 국내 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개정(2009. 9. 1.)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3. 교육대학원의 상담교육전공, 초등영어교육전공은 현직교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9.9.1.)
4. 「학·석사연계과정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자격을 충족한 자 신설(2016.6.14.)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개정(2009.9.1.)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제7조(입학전형)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 방법(지원절차, 합격자의 결정)은 각 대학원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조(입학전공분야) 학위과정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5. 4. 26.)

제9조(재입학, 편입학, 전과) ①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 편입학,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08. 3. 1.)

② 여석의 산출, 선발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석사 및 박사과정 각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를 정규등록 해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입학한 자는 5학기를 정규등록 해야 한다. **개정(2005. 4. 26., 2006. 3. 21., 2018.11. 6.)**

④ 수업연한 내에 수료하지 못한 자가 수강신청을 할 경우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1/2, 4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08. 3. 1.)**

제3장 학적변동

제11조(휴학)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할 수 있다. **개정(2004. 3. 1.)**

②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3분 1 이상 수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학기 단위로 휴학을 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기간은 연속 2학기,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 입대 휴학의 경우 군 복무 해당학기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학기 이내로 특별휴학을 인정하되 이를 일반휴학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2013. 5. 10., 2014. 9. 30., 2019. 4. 24.)**

1.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2019. 4. 24.)**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시설 **(2019. 4. 24.)**
3. 근무지 변경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개정(2019. 4. 24.)**
4.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설(2019. 4. 24.)**

제12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2004. 3. 1.)**

제13조(퇴학)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4. 3. 1.)**

제14조(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시킨다. **개정(2004. 3. 1.)**

1. 휴학기간을 초과한 자
2.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5. 기타 징계처분에 의거 제적사유에 해당된 자 **개정(2004. 3. 1.)**

제4장 수업연한·교육과정·학점·성적 및 수료

제15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교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6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2004. 3. 1., 2018.11. 6.)

② 각 과정의 재학연한은 각 대학원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6조(수업일수 및 학점 당 이수시간)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며, 학점 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2004. 3. 1.)

제17조(교육과정)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따라 개설한다.

②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8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대학원의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각 과정별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의 타 전공 입학자는 대학원 내규에 따라 18학점까지 석사학위 과목을 포함하여 학과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수 있다.

2. 본 대학교 학부과정의 4학년 학생 중 3학년까지의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에게 동일 학과의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학기당 3학점(총6학점) 이내에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강 전에 주임교수와 소속 대학원장 및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2004. 3. 1.)

② 특수대학원의 이수학점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매학기 10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개정(2006. 3. 21., 2010. 4. 27.)

제19조(학위과정의 수료인정)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각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각 과정별로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0조(수료학점) 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개정(2004. 3. 1., 2005. 6. 15., 2006. 3. 21., 2020. 8. 12.)

②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신설(2006. 3. 21.)

③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2004. 3. 1., 2019. 4. 24.)

제21조(학점인정) ① 본교 내외의 대학원 동일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 대학원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2019. 4.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③ 편입학, 자퇴, 제적된 자가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였을 경우 이전 취득학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2009. 9. 1., 2019. 4. 24.)

④ 계약학과 소속 학생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 개정(2016.6.14.)

제22조(학·군제휴교류협약에 의한 학점인정) 각 특수대학원은 학·군 제휴교류협약에 따라 군 내 교육기관 및 협약체결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되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3조(타 대학원간 교류학점인정) ① 각 특수대학원은 교내 특수대학원간 또는 한국지역대학연합 회원교 대학원에서 본교의 허락을 받아 취득한 학점을 14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대학원은 협정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학기 당 6학점 이내로 하며 재학기간 중 석사과정에서는 9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에서는 12학점까지 인정한다.

제24조(학업평가) 학위과정의 학업성취의 평가는 아래와 같다. 단,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위과정 이수 전까지 2009학년도 기준에 따른다. **개정(2009.1.19., 2016.2.3.)**

등급	점수	평점
A ⁺	95~100	4.5
A ⁰	90~94	4.0
B ⁺	85~89	3.5
B ⁰	80~84	3.0
C ⁺	75~79	2.5
C ⁰	70~74	2.0
F	69이하	0

제25조(성적인정) 성적인정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의 2/3이상, 성적등급은 C⁰(2.0)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과목 평점평균은 B⁰(3.0)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2010. 1. 14., 2013. 11. 14.)**

제5장 자격시험

제26조(종합시험, 외국어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석·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시험 과목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7조(시험면제, 재시험) 외국어시험 면제와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의 재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장 학위수여

제28조(학위수여 및 종별) ① 각 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별표1>내지 <별표2>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별표3>으로 정한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인정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학과별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2020. 8. 12.)**

② 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 학위를 수여한다.

③ **삭제(2020. 8. 12.)**

④ 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자퇴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신설(2004. 11. 2.)**

⑤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2015. 2. 3.)**

제29조(학위 표기방법)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표기방법은 전공분야에 따라 별표1, 2와 같이 구별된다. **개정(2004. 3. 1.)**

제30조(명예박사학위) ① 문화, 학술, 사회 및 본교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공적

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 종별은 제28조에 규정된 학위의 범위 내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자의 공헌도에 의해 구분한다.

③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2015. 2. 3.)**

④ **삭제 (2006. 10. 31.)**

제31조(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 예정인 자 **개정(2022.01.17.)**
2. 대학원별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 및 평점 이상을 취득 예정인 자 **개정(2014.8.19., 2022.01.17.)**
3. 지도교수의 논문 제출 승인을 받은 자
4. 기타 각 대학원운영규정으로 정한 사항

제32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학과 주임교수가 추천한 외부 인사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능계열은 조교수 이상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2014.8.19., 2017.1.25.)**

②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술·연구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지도하며 논문지도 학점을 부여한다.

제33조(논문계획서, 논문작성 및 제출) 각 대학원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4조(논문심사) ① 학위청구 논문심사는 석사학위과정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은 5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2004. 11. 2.)**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장 공개과정·연구생·위탁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35조(공개과정) ① 총장은 필요에 따라 공개과정을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2004. 3. 1.)**

② 공개과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6조(연구생) ① 각 대학원에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석·박사학위과정에 연구 또는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은 후 자격시험을 거쳐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개정(2004. 3. 1.)**

② 연구생의 수강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7조 삭제 (2004. 3. 1.)

제38조 삭제 (2004. 3. 1.)

제8장 외국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39조(교육과정공동운영) 총장은 외국대학(원)과의 협약에 따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2010. 3. 25.)

제39조의2(운영방법 및 학위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방법과 학위수여는 교육과학기술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및 본 대학원 「대학원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제도 등 교육과정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대학과의 협정에 따른다. 학위수여의 경우 외국대학(원)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복수학위, 공동학위 또는 본 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2010. 3. 25)

제9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40조(조직) 각 대학원에는 원장, 교학팀장 및 약간명의 직원과 조교를 둔다. 다만, 대학원에는 규모에 따라 부원장(또는 교학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2021. 10. 29.)

제41조(주임교수, 지도교수) 각 대학원에는 각 학과의 학사를 담당할 주임교수를 두고 개별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2005. 4. 26.)

제42조(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구성은 각 대학원장과 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대학원 부원장(또는 교학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개정(2004. 11. 2., 2016. 10. 18., 2020. 8. 11., 2020. 8. 12., 2021. 10. 29.)

③ 대학원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한다.

④ 각 대학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규정 따른다.

제43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1, 2호는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 등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44조(심의방법)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2004. 3. 1.)

제10장 보칙

제45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남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대학원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 공포한다. 신설(2004. 3. 1.)

제47조(운영규정) 각 대학원은 이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학원 별로 운영규정을 따로 정한다. 신설(2004. 3. 1.)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이전의 각 대학원 학칙은 폐지하며, 종전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본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경과조치)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사회상담학과의 명칭이 상담심리학과로, 협동조합학과의 명칭이 자산관리학과로 변경됨에 따라 이 학칙개정 당시 사회상담학과, 협동조합학과 재적생은 2004년 3월 1일부터 상담심리학과, 자산관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2. 이 학칙 개정 당시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생활체육학과 재적생은 2004년 3월 1일부터 스포츠과학대학원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학칙은 2004년 7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학칙은 2004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학칙은 2005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학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학칙은 2005년 10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삭제”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당시 각 대학원에 속한 재적생중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재적생은

새로 신설되는 국방전략대학원 해당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1. 경영대학원 계룡대, 자운대 분원 재적생(MBA전공, C4I전공)
2. 사회문화대학원 육군32사단 분원 재적생 (창업컨설팅학과)
3. 행정정책대학원 (안보국방정책학과와 국방획득관리학과) 재적생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당시 행정정책학과, 경찰행정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이 변경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경영대학원과 정보산업대학원의 재적생은 2007년 3월 1일부터 경영산업대학원 재적생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당시 국방전략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계룡대, 자운대 분원 재적생(MBA전공, C4I전공)은 경영산업대학원의 해당학과 재적생으로, 그리고 육군 32사단 분원 재적생(창업컨설팅학과)은 사회문화대학원 해당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7년 9 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당시 국방전략대학원 창업컨설팅학과에 재적생은 경영산업대학원 재적생 (창업컨설팅학과)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8년 3 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8년 5 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8년 7 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9년 3 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9년 9 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0년 3 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0년 9 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3 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경영산업대학원 재적생은 2011년 3월 1일부터 경영대학원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3 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국방전략대학원 국방M&S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11년 3월 1일부터 국방무기체계·M&S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사회문화대학원 창업컨설팅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2011년 3월 1일부터 사회문화대학원 기업컨설팅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로부터 대학원 도시지역계획학과에 재적생은 도시부동산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또한 사회문화대학원 아동영어학과 재적생도 아동영어지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③(경과조치) 2011년 2학기 현재 대학원 생명과학과 및 생명공학과 재적생은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년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위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당해 재적생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모집단위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수 있다.
- ④(경과조치) 교육과학기술부 인가(교직발전기획과, 2010. 8. 31)에 따라 교육대학원 공통과학교육전공은 2011년 3월 1일부터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으로 분리하도록 한다. 단, 위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경우, 전공분류기준에 따라 변경된 모집단위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하도록 하되, 세부기준은 교육대학원장이 정하도록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경영정보학과 및 수학교육과 과정신설에 관한 규정 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변경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학과 명칭이 변경된 재적생은 소속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대학원 학과, 학기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아래 학과명 변경 이전 해당학과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학과 명칭 변경전 학과 소속으로 본다.

2013학년도 편제		2014학년도 편제	
개설과정	학과	개설과정	학과

석사과정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정치언론국제학과
	물리학과		광·센서공학과
박사과정	물리학과	박사과정	광·센서공학과

② 석사과정의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의 정치 및 지역발전학과는 재적생 졸업시까지 학과를 존속하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로부터 사회문화대학원 및 행정복지대학원 재적생은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학원 석사과정의 화학공학과, 생명·정보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의 신소재·화학공학과,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의 생명·나노융합기술학과,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일어교육전공, 영재교육전공은 재적생 졸업시까지 학과를 존속하기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영대학원과 국방전략대학원을 경영·국방전략대학원으로 통합하는 사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석사과정 부동산학과, 아동영어지도학과,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초등영어교육전공은 재적생 졸업시까지 학과를 존속하기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석사과정 특허법무학과, 행정정책학과는 재적생 졸업 때까지 학과를 존속하기로 한다.

부 칙(2018. 11. 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석사과정 공연예술학과는 재적생 졸업 때까지 학과를 존속하기로 한다.

부 칙(2018. 12. 4. 개정)

(시행일) 이 변경 학칙 별표 2는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료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 박사학위과정 입학자는 제20조제 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부 칙(2019. 7. 25., 2019.11.18., 2019.12.30. 개정)

(시행일) 이 변경 학칙 별표 1 및 별표 2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11. 개정)

(시행일) 이 변경 학칙 별표 1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4. 개정)

(시행일) 이 변경 학칙 별표 1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 규정>(2020.8.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남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42조제2항 중 “교무연구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개정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20. 8. 12. 개정)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0. 개정)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8. 개정)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29. 개정)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1. 17. 개정)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학원 입학정원 및 개설학과(전공), 학위종별 개정(2021.06.28.)

개설과정	입학정원	계 열	학 과	학위종별
석사과정	124명	인문 사회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기독교학과	
			문예창작학과	
			사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영어학과(13.11.14. 신설)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철학과	
			문헌정보학과	
			국어교육과(13.11.14. 신설)	교육학석사
			교육학과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무역학과	무역학석사(07.9.1. 개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법학과	법학석사	
		정치언론국제학과(13.11.14개정)	정치학석사	
		범죄학과(11.11.8. 신설)	범죄학석사	
		MICE호텔관광학과 (13.11.14. 신설, 18.12.4. 개정)	호텔관광학석사(19.7.25.개정)	
		자연과학	수학과	이학석사
			생명시스템과학과(11.11.8. 신설)	
			식품영양학과	
			화학과	
		공 학	건설시스템공학과(09.1.19.개정)	공학석사
			건축공학과	
광·센서공학과(13.11.14. 개정)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멀티미디어학과				
전기전자공학과(19.11.18.개정)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공신소재공학과(15.8.4. 신설)				
예·체능	미술학과	미술학석사		
	체육학과	이학석사(20.3.11.개정)		
학과간 협동과정 (석사과정)	인문사회	기록관리학과	문학석사	
		상담학과(08.3.1. 신설)	상담학석사	
		글로벌비즈니스학과(14.8.19. 신설)	경영학석사	
		글로벌경제통상학과(21.1.20.신설)	경제학석사	
		사회적경제기업정책학과(21.10.29.신설)	경영학석사	
	자연과학	코스메틱사이언스학과(20.5.4.신설)	이학석사(20.5.4.신설)	
학·연·산 협동과정 (석사과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07.9.1. 개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1.11.8. 신설)		
합 계	124명	4계열	44개 학과	

*표시는 동일명칭으로 일반학과와 계약학과를 모두 운영하는 학과로 계약학과의 정원이 따로 있음.

개설과정	입학정원	계 열	학 과	학위종별
박사과정	108명	인문사회	○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 문예창작학과	
			○ 사회복지학과	
			○ 아동복지학과	
			○ 아동영어학과(13.11.14. 개정)	
			○ 영어영문학과	
			○ 철학과	
			○ 기독교학과 -기독교학전공 -실천신학전공(16.10.11. 개정)	-철학박사(07.12.12. 개정) -신학박사(07.12.12. 개정) (16.10.11. 개정)
			○ 국어교육과(13.11.14. 개정)	교육학박사
			○ 교육학과	
			○ 영어교육과	
			○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회계학과	
			○ 무역학과	
		○ 경영정보학과(12.11.15. 신설)		
		○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법학과	법학박사	
		○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정치언론국제학과(13.11.14.신설)	정치학박사	
		○ MICE호텔관광학과(19.7.25.신설)	호텔관광학박사	
		자연과학	○ 수학과	이학박사
			○ 생명시스템과학과(11.11.8. 신설)	
			○ 식품영양학과	
			○ 화학과	
			○ 수학교육과(12.11.15. 신설)	교육학박사
		공 학	○ 건설시스템공학과(09.1.19. 개정)	공학박사
			○ 건축공학과	
○ 광센서공학과(13.11.14. 개정)				
○ 기계공학과				
○ 멀티미디어학과				
○ 산업공학과(11.11.8. 신설)				
○ 전기전자공학과(14.8.19.신설 19.11.18.개정)				
○ 정보통신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화공신소재공학과(15.8.4. 신설)				
예·체능계	○ 체육학과	이학박사(20.3.11.개정)		
	○ 미술학과(13.11.14. 신설)	미술학박사		
학과간 협동과정 (박사과정)	인문사회	○ 상담학과	상담학박사	
		○ 기록관리학과(14.8.19. 신설)	문학박사	
		○ 글로벌경제통상학과(21.1.20. 신설)	경제학박사	
		○ 문화예술경영학과(21.1.20. 신설)	문화예술경영학박사	
	자연과학	○ 사회적경제기업정책학과(21.10.29.신설)	경영학박사	
		○ 코스메틱사이언스학과(20.5.4.신설)	이학박사(20.5.4.신설)	
학·연·산 협동과정 (박사과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7.9.1. 개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1.11.8.신설)		
합 계	108명	4계열	42개 학과	

○ 석·박사 통합과정 설치학과

【별표2】 특수대학원 각 대학원별 입학정원 및 개설학과(전공), 학위종별

대학원	개설과정 및 입학정원	계 열	설치학과(전공)	학 위 종 별
사회문화· 행정복지 대 학 원	석사과정 107명 개정(09.01.19., 11.11.08., 14.01.23., 21.06.28.)	인문사회	언론홍보광고학과 아동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문예창작학과 (09.09.01 개정) 공연예술학과 (2018.11.6. 삭제) 청소년지도학과 행정정책학과 (2018.5.28. 삭제) 특허법무학과 (2018.5.28. 삭제) 정보통계학과 사회복지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2017.11.7. 신설) 물관리융합정책학과 (2018.5.28. 신설) 법무학과 (2018.5.28. 신설) 사회적경제학과 (2018.12.4. 신설)	언론학석사 아동복지학석사 상담학석사 문학석사 공연예술학석사 (2018.11.6. 삭제) 청소년교육학석사 행정학석사 (2018.5.28. 삭제) 법학석사 (2018.5.28. 삭제) 경제학석사(09.1.19개정) 사회복지학석사 문화예술경영학석사 (2017.11.7. 신설) 정책학석사 (2018.5.28. 신설) 법학석사 (2018.5.28. 신설) 사회적경제학석사 (2018.12.4. 신설)
		자연과학	패션산업학과 (07.12.12. 신설) (21.10.29. 개정)	패션산업학석사
		예·체능 (10.09.28 개정)	조형미술학과 향장미용학과 골프레저경영학과 (11.11.08. 신설) (16.10.11. 개정) 미디어영상학과 (21.10.29. 신설)	미술학석사 미용학석사 스포츠경영학석사 미디어영상학석사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75명 개정(11.11.08., 16.10.11., 21.06.28.)	인문사회	교육학전공(16.5.4 교육부승인) 상담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07.12.12. 신설)	교육학석사
		자연과학	수학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공 학	전자계산교육전공 (16.10.11. 개정)	
		예·체능	미술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대학원	개설과정 및 입학정원	계 열	설치학과(전공)	학 위 종 별
경영·국방 전략대학원 (10.6.8개정) (16.10.11개정)	석사과정 60명 개정(09.01.19., 11.11.08., 13.11.14., 16.10.11., 21.06.28.)	인문사회	MBA과정 안보국방정책학과 국방획득정책학과 (‘14.8.19. 신설, ‘19.12.30. 개정)	경영학석사 군사학석사 국방획득정책학석사 (‘14.8.19.신설, ‘19.12.30. 개정)
학제신학 대 학 원	석사과정 25명 개정(11.11.08., 21.06.28.)	인문사회	목회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신학석사 상담학석사
계	석사과정 267명	4계열	21개 학과(12개 전공)	

【별표3】 신설(2020.08.12.)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인정기준(제28조 제1항 관련)

1. 6학점 이상 추가 이수
2. 프로젝트 연구보고서(계약학과에 해당)
3. 특허등록
4. KCI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 게재논문(주저자 또는 교신저자)